**상호협력 의향서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사 업 명** |  | |
| **협력기간** |  | |
| **정산날짜** |  | |
| **양사상호** | ㈜AA | ㈜BB |
| **주 소** |  |  |
| **총책임자** |  |  |
| **연 락 망** |  |  |

※ 협력 의향을 받은 기업을 A 협력 의향을 제시한 기업을 B로 작성, 두 기업 모두 동등한 협력 구조를 갖추며 본 의향서를 작성한다. ※

㈜A와 ㈜B는 20 년 월 일부로 000 사업에 대해

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한다.

**제1조**

본 의향서에 기술된 상호협력 내용을 기초로 한 전략적인 제휴을 통해 서로가 공동이익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
**제2조**

양사는 목적 수행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, 인력 투입, 연구 개발 등 각각의 내부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에 최선을 다 한다.

**제3조**

공동 이익을 창충할 수 있는 것을 최 우선 목표로 하며, 시장에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.

**제4조**

양사는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한다.

**제5조**

본 협의에 의하여 양사가 수행할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
**수행업무**

1 ㈜ AA는 CC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천 재원과 컨텐츠를 제공한다.

2 ㈜ AA가 공급하는 원천 재원과 컨텐츠는 ㈜AA와 ㈜BB가 사전 혀의한 특정 영역의 내용으로 하며, 향후 필요에 따라 확대해나간다.

3 서비스되는 컨텐츠의 개발 및 DD는 ㈜AA와 ㈜BB의 실무자 미팅을 통해서 진행하며, 업무 추진시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 또한 양사의 실무자들의 미팅을 통해 협력해나가도록 한다.

4 ㈜ AA는 ㈜BB의 기술기반을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을 매월 협의된 일정에 맞게 정산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 및 수익에 대한 배분률은 추후 계약 체결시 결정하기로 한다.

**제6조**

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당자사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**

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력기간 동안 소요된 당사자의 제반 비용응 각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.

**제8조**

양사는 상호 업무제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의향서의 내용을 수정, 변경할 수 있으며, 양사 모두에게 고지를 한다.

**제9조**

양사는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상 호 | **㈜ AA** | | **㈜ BB** | |
| 직 인 |  | (인) |  | (인) |
| 총책임자 |  | (인) |  | (인) |